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10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법인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996,200원, 지방교육세 2,646,970원, 농어촌특별세 2,651,030원 합계 52,29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4.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나. 원고는 아래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4. 26.부터 2018. 2. 1.까지 [redacted]남 [redacted]시 B외 9필지 28,788㎡(이하 순번 1 내지 5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각 토지 취득일별로 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됨,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인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9년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9. 7. 23.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초 경감하였던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건 토지 중 순번 1 내지 4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redacted]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11.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46,996,200원, 지방교육세 2,646,970원, 농어촌특별세 2,651,030원 합계 52,294,20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물건	취득일	취득세(원)	지방 교육세(원)	농어촌 특별세(원)	합계(원)
1	[redacted]시 B	2017.4.26.	11,692,860	662,910	664,140	13,019,910
2	[redacted]시 C, D	2017.7.28.	3,718,300	210,000	210,400	4,138,7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3	[redacted]시 E, F	2017.11.2.	22,223,170	1,249,940	1,252,370	24,725,480
4	[redacted]시 G, H, I	2018.2.1.	9,361,870	524,120	524,120	10,410,110
	합계		46,996,200	2,646,970	2,651,030	52,294,200
5	[redacted]시 J, K	2017.6.22.	11,211,390	634,650	635,840	12,481,880

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 합계 52,294,200원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벼를 직접 경작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제11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3항 제1호), 이때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원고가 벼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인근 주민 등이 원고의 자경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9. 5. 29.경 및 2019. 8.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은 타인이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장결과보고서(을 제3호증), 사실관계 확인서(을 제5호증)는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것으로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검사를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세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농지의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현지인들에게 질문한 행위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조사권의 남용 및 재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의 법인장부 확인결과,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어디에도 쌀 등의 농산물 판매금액, 농약·비료 등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직원이 별도로 없고 필요할 때 사람을 고용해서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 지급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가 제출한 농작물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갑6호증) 중 2017년부터 2018년 내역은 원고의 대표자 개인이 L조합에 쌀을 판매하거나 농약 등을 매수한 내역일 뿐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극히 적은 양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자경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10-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